

제3101호  
2024. 6. 19.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 :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 치 법 규

선	기관 의 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규 칙]

- 제78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제784호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 7
- [입법예고]
- 제2024-637호 :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

● 고 시

- 제2024-38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17
- 제2024-39호 :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31

● 공 고

- 제2024-627호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 3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8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b>총 계</b>		<b>1,314</b>	<b>905</b>	<b>31</b>	<b>120</b>	<b>258</b>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b>일반직 계</b>		<b>1,306</b>	<b>901</b>	<b>27</b>	<b>120</b>	<b>258</b>
<b>3급 소개</b>		<b>1</b>	<b>1</b>			
행정		1	1			
<b>4급 소개</b>		<b>7</b>	<b>6</b>		<b>1</b>	
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b>5급 소개</b>		<b>65</b>	<b>36</b>	<b>1</b>	<b>13</b>	<b>15</b>
행정		42	27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b>6급 소개</b>		<b>266</b>	<b>188</b>	<b>4</b>	<b>25</b>	<b>49</b>
행정		167	111	4	9	43
세무		17	17			
사회복지		12	9			3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7			7	
환경		2	2			
시설(토목8, 건축6, 지적4, 디자인1, 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b>7급 소개</b>		<b>413</b>	<b>299</b>	<b>15</b>	<b>42</b>	<b>57</b>
행정		230	164	11	10	45
세무		26	26			
사회복지		24	12			12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4)		15	14	1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9	1			8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2	2			
약무		1				1
약무·간호		1				1
간호		16				16
시설(토목18, 건축15,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44	4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2	12			
전기운영(전기)		1	1			
<b>8급 소개</b>		<b>371</b>	<b>276</b>	<b>2</b>	<b>28</b>	<b>65</b>
행정		201	154	2	6	39
세무		25	25			
사회복지		39	13			26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1	1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7, 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4	14			
전기운영(전기)		3	3			
사무운영(워드)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명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b>9급 소계</b>		<b>181</b>	<b>93</b>	<b>5</b>	<b>11</b>	<b>72</b>
행정		51	20	1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28	7			21
전산		1	1			
속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4, 전기9)		13	13			
농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도목6, 건축3, 지적3)		12	12			
방송통신		2	2			
시설관리(일반1, 기계4, 전기2)		7	7			
위생		3	3			
운전		23	3	2	3	15
사무운영(워드)		9			1	8
<b>행정·지적</b>		<b>2</b>	<b>2</b>			
<b>전문경력관 소계</b>		<b>2</b>	<b>2</b>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2	2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b>별정직 계</b>		<b>7</b>	<b>3</b>	<b>4</b>		
<b>5급상당 소계</b>		<b>3</b>	<b>1</b>	<b>2</b>		
비서		1	1			
전문위원		2		2		
<b>6급상당 소계</b>		<b>1</b>	<b>1</b>			
비서		1	1			
<b>7급상당 소계</b>		<b>3</b>	<b>1</b>	<b>2</b>		
비서		3	1	2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개정이유

- 지적직 결원을 해소하고 전세 사기 피해 사실 조사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

#### 2. 주요내용

- 복수직렬 신설 : 행정 9급 2명 감 → 행정·지적 9급 2명 증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84호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u>보상금 신청서</u>		
1. 대상자 :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철거위치 :		
3. 철거일시 :		
4. 보 상 액 :	원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인감증명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1통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p>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b>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신청서</b>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전화번호			④건 물 명		
	⑤주소					
⑥금연구역 지정 (해제) 대상지역	⑦명칭(지역명)					
	⑧소재지					
	⑨범위 (연장길이(m) 또는 연면적(m))					
⑩금연구역 지정 동의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⑪금연구역 해제 동의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공개공지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보도(도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날인)</span> <b>서울특별시 중구청장</b>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또는 공개공지의 소유자(관리자) 및 대형건축 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이상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점유자, 관리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 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신청인 :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					
<b>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신청서</b>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금연구역 지정 (해제) 대상지역	⑥ 명칭(지역명)				
	⑦ 소재지				
	⑧ 범위 (연장길이(m) 또는 연면적(m))				
⑨ 시설 정보	⑩시 설 명				
	⑪시설장(대표)				
	⑫소재지				
⑬원아수					
⑩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단위: 명)	학부모 및 시설 근무자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 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날인)</span> 연락처: <span style="float: right;">서울특별시 중구청장</span>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로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 금연구역 지정 [ ] · 해제 [ ]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전화번호	
⑥ 금연구역 지정 (해제) 대상지역	⑦ 명칭(지역명)			
	⑧ 소재지			
	⑨ 범위(연장 길이(m) 또는 면적(㎡))			
⑩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건수)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상기 지역 생활주민(인접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으로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견 수			
	찬성	반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0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금연구역 지정 신청 구역(범위)의 도면에 관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비서류 중 전산조화가 가능한 정보 및 담당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추가
- 민원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인 요구에 의한 정보 전산조회 활용 근거 및 동의서 삽입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63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설 및 개정되어 고독사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위법 명시(제1조)
-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 범위 확대(제2조)
- 고독사 정의 변경으로 1인 가구 명시 삭제 (제2조 및 제4조 등)
- 지역 예방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활동가의 활동비 (실비) 지급 가능 명시(제8조)

####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서울 중구청), 문의전화 : 3396-5343, FAX: 3396-8729, 전자우편 : neria1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을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혼자 임종”을 “임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필요 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4조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1인 가구 중 경제적”을 “경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중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당)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 주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삭 제>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 ----- <u>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u> ----- <u>임종</u> -----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 <u>가구</u> -----.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정책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u>필요하다고</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	제4조(적용범위) -----

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u>가구</u> -----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 <u>실태조사</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1. <u>경제적</u> -----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 <u>가구</u>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 <u>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정</u> <u>망 확충</u>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수당)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9조 (생 략)	제9조·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38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 및 제2023-471호(2023.10.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20호 (2020.09.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5-1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72호(2021.06.02.)로 사업시행계획인가(5-3구역)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 7,672.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권옥선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세우빌딩)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8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4.06.14.(금)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층 수 (지상/지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용도
6,424.6	37 / 8	134,218.59	49.28	1,503.65	169.8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667.4	17 / 3	6,444.42	55.06	796.61	78.9	공장, 업무시설 (공공임대산업시설)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측량값 기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부담자 및 부담내용
정비기반시설	도로	831.9	도로(중로 3-2)	91.3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
			도로(중로 3-1)	248.2		
			공공공지	240.9		
합계	-	831.9	-	580.4	-	-

9.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면적(m <sup>2</sup> )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동수/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1,680.00	7,672.40							4,876.79						
수용/사용	1	산림동 190-18	대	56.20	56.2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철근콘크리트	1/3	136.47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	산림동 199	대	76.00	76.0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56.20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3	산림동 112-10	대	160.00	160.0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점포/연와조	1/2	175.41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4	산림동 112-25	대	1.30	1.3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5	산림동 120	대	56.20	56.2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연와조	1/3	118.11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6	산림동 190-23	대	45.60	45.6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목조	1/1	36.36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7	산림동 190-31	대	20.80	20.8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8	산림동 190-14	대	52.90	52.9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63.64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9	산림동 109-1	대	43.00	43.0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목조	1/1	23.14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10	산림동 109	대	56.20	56.2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11	산림동 110-1	대	4.30	4.3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세멘트벽조	1/1	53.09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12	산림동 110-2	대	25.50	25.5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13	산림동 183	대	105.80	105.8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2	72.73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14	산림동 184	대	49.60	49.6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15	산림동 185	대	52.90	52.9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연와조	1/1	59.50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16	산림동 117-1	대	166.20	166.2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17	산림동 181-1	대	81.30	81.3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면적(m <sup>2</sup> )		이용상황	용도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구조	동수/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사용	18	산림동 190-3	대	349.10	349.1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공장/목조 부속창고	1/1 1/1	112.40 90.91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19	산림동 111-3	대	47.30	47.3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0	산림동 112-12	대	3.30	3.3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35.54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1	산림동 112-24	대	0.70	0.7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2	산림동 190-29	대	31.70	31.7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73.55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3	산림동 198-2	대	95.90	95.9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65.59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4	산림동 140-2	대	35.40	35.4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5	산림동 178	대	92.60	92.6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38.72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6	산림동 140-4	대	26.40	26.4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73.45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강/도 상/시 분/당 0/메로 13 ***				
수용/사용	27	산림동 140-8	대	2.60	2.6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8	산림동 196-6	대	4.00	4.00	일반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29	산림동 196-7	대	7.30	7.30	일반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30	산림동 197-5	대	18.80	18.8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31	산림동 113-1	대	66.10	66.1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32.83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32	산림동 114	대	130.20	130.2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59.50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33	산림동 114-1	대	18.50	18.5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34	산림동 197-2	대	105.50	105.5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42.11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용/사용	35	산림동 197-3	대	163.30	163.30	중심상업지역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77.75	교****타(주) (세****PF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구	연번	권리소재지	면적(m <sup>2</sup> )		이종양향	용도지역	소유자		건축물			소유권이의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용도/구조	층수/총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종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영등포구	74	산림동 191-1	대	66.10	66.1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목조	1/1	45.62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75	산림동 191-2	대	39.70	39.7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76	산림동 190-13	대	62.80	62.8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98.48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77	산림동 108-1	대	86.90	86.9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45.83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78	산림동 108-2	대	5.60	5.6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79	산림동 139	대	59.50	59.50	주거지역	구보지사사택(주) (세문5구역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주택/목조	1/2	66.61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0	산림동 107	대	69.40	69.4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2	73.85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1	산림동 190-22	대	40.70	40.7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2	42.98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2	산림동 190-52	대	5.20	5.2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3	산림동 190-53	대	9.70	9.7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4	산림동 190-17	대	49.60	49.6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점포/목조	1/1	32.23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5	산림동 190-20	대	85.60	85.6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목조	1/2	118.19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6	산림동 116	대	66.10	66.1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7	산림동 116-1	대	19.80	19.8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목조	1/1	19.04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8	산림동 116-2	대	6.90	6.9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89	산림동 190-24	대	44.60	44.6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	33.06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90	산림동 190-52	대	14.20	14.2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91	산림동 104	대	76.00	76.00	영양판매업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점포(연와조)	1/2	195.04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92	산림동 112-3	대	26.40	26.40	영양판매업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구	연번	권리소재지	면적(m <sup>2</sup> )		이종양향	용도지역	소유자		건축물			소유권이의의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용도/구조	층수/총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종류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영등포구	93	산림동 192-3	대	64.10	64.1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목조	1/6	378.91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94	산림동 112-7	대	56.50	56.5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95	산림동 112-8	대	3.30	3.30	영양판매업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96	산림동 112-20	대	75.40	75.40	영양판매업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41.59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97	산림동 138-3	대	15.20	15.2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주택/목조	1/1	11.01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98	산림동 120-2	대	56.20	56.2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99	산림동 182	대	92.60	92.60	주거지역	국(기획재정부)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 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32-15 ***	공장/목조	1/2	143.24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 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32-15 ***	가처분 압류 국(***부) 근저당 감합	인천 부평구 산곡동 332-15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9 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9 가		
서울시영등포구	100	산림동 186	대	66.10	66.1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장****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3-7 승현빌딩 ***	공장(세멘트) 목조	1/1	56.10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장****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3-7 승현빌딩 ***				
서울시영등포구	101	산림동 138-2	대	63.80	63.8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최****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21동 ***									
서울시영등포구	102	산림동 141-1	대	176.50	176.5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최****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21동 ***									
서울시영등포구	103	산림동 112-1	대	38.00	38.00	영양판매업	김****(주) (세****PV(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79 삼성아파트 ***	근생/목조	1/3	88.77	김****(주) (세****PV(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79 삼성아파트 ***				
서울시영등포구	104	산림동 117	대	46.30	46.30	주거지역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목조	1/2	69.42	김****(주) (세****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서울시영등포구	105	산림동 115	대	76.00	76.00	주거지역	윤****(주)	서울 중구 신림동 ***	주택/목조	1/2	69.42	윤****(주)	서울 중구 신림동 ***				
서울시영등포구	106	주교동 145-6	대	105.10	105.10	영양판매업	이****(주)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7 잠원빌라트 *** 이**** 서울 서초구 잠원로 177, ***	주택/목조	1/1	42.98	이****(주)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7 잠원빌라트 *** 이**** 서울 서초구 잠원로 177, ***				

구	연	권 리 의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 목	면 적 (㎡)		이 용 용 상 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수 상/ 용/ 사 용	107	산림동 200-2	대	109.10	109.10	중상업	아근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301동 ***	주택/목조	1/1	55.37	아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					
수 상/ 용/ 사 용	108	산림동 201-5	대	5.60	5.60	중상업	아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				아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					
수 상/ 용/ 사 용	109	산림동 177	대	92.60	92.60	중상업	잔영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로31번길 ***	/목조	1/1	51.83	조행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4 신성아파트 ***	근저당	(주)조*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수 상/ 용/ 사 용	110	산림동 190-28	대	39.30	39.30	중상업	고***택(주) (세***P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근생/목조	1/1	20.66	고***택(주) (세***P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 상/ 용/ 사 용	111	산림동 111-1	대	8.60	8.60	중상업	조수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51길 48 ***						근저당	국 (강***장)			
수 상/ 용/ 사 용	112	산림동 112-13	대	53.20	53.20	중상업	조수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51길 48 ***	근생/목조	1/2	64.03	조수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51길 48 ***					
수 상/ 용/ 사 용	113	산림동 82-17	대	150.00	150.00	중상업	(주)유*선	서울 중구 산림동 ***						지상권	(주)조*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수 상/ 용/ 사 용	114	산림동 105	대	59.50	59.50	일반상업	최행	서울 중구 산림동 ***	주택/목조	1/1	26.45	최재행	서울 중구 산림동 ***					
수 상/ 용/ 사 용	115	산림동 105-1	대	16.50	16.50	중상업	최행	서울 중구 산림동 ***										
수 상/ 용/ 사 용	116	산림동 190-25	대	72.10	72.10	중상업	하훈	서울 강남구 청담동 23 현대아파트 *	주택/목조	1/1	46.28	하정훈	서울 강남구 청담동 23 현대아파트 *					
수 상/ 용/ 사 용	117	산림동 187	대	69.40	69.40	중상업	고***택(주) (세***PPV)(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수 상/ 용/ 사 용	118	주교동 145-1	대	53.90	53.90	일반상업	갈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111동 ***				갈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111동 ***	압류	국 (도***장)			
							갈정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57 주공아파트 113-***				갈정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57 주공아파트 113-***	압류	강구 (사***사)			
							갈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118-2, 101동 ***	주택/목조	1/1	41.59	갈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118-2, 101동 ***	압류	국 (남***장)			
							갈권	서울 강동구 잠실동 35 아파트 353동 ***				갈권	서울 강동구 잠실동 35 아파트 353동 ***					
							갈란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48, 113동 **				갈란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48, 113동 ***					

구	연	권 리 의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 목	면 적 (㎡)		이 용 용 상 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갈*미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93, 90 8동 ***				갈*미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93, 90 8동***						
							갈*성	서울 강북구 솔샘로60길 ***				갈*성	서울 강북구 솔샘로60길 ***						
							갈*옥	울산시 전하동 56-9. ***				갈*옥	울산시 전하동 56-9. ***						
							갈*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 35, 비동 ***				갈*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 35, 비동 ***						
							갈*이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5길 12, 105동 ***				갈*이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5길 12, 105동 ***						
							이*섭	서울 강동구 잠실동 35 아파트 353동 ***				이*섭	서울 강동구 잠실동 35 아파트 353동 ***						
							이*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8길 3 6, 201동 ***				이*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8길 3 6, 201동 ***						
							(주)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상만호길 ***				(주)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상만호길 ***						
수 용/ 사 용	119	주교동 145-4	대	2.30	2.30	일반상업	갈*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111동 ***						압류	강구 (사***사)				
							갈*란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248, 113동 ***											
							갈*미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93, 90 8동 ***											
							갈*성	서울 강북구 솔샘로60길 ***											
							갈*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 2가 ***											
							갈*부	서울 중구 산림동 ***											
							갈*천	서울 중구 주교동 ***											
							(주)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상만호길 ***											

구 번	연 번	권 리 의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 목	면 적(m <sup>2</sup> )		이 용 상 황	용 도 지 역 또 는 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사용	120	산림동 90-2	대	20.20	20.20	일반 상업업	김*복 김* 삼*진 유*호 이*용 이*복 전*훈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21길 7, *** 경기도 구리시 장지대로37번길 55, 102동 *** 서울 성수동 성수일로8길47, 102동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424동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21길 7,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164, ***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0-231 현대빌라 ***						근저당 근저당	(주)국**행 중***행					
수용/사용	121	산림동 90-4	대	91.60	91.60	일반 상업업	김*복 김* 삼*진 유*호 이*용 이*복 전*훈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21길 7, *** 경기도 구리시 장지대로37번길 55, 102동 *** 서울 성수동 성수일로8길47, 102동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424동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21길 7,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164, ***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0-231 현대빌라 ***	영업/목조	1/1	69.42	김*복 김* 삼*진 유*호 이*용 이*복 전*훈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21길 7, *** 경기도 구리시 장지대로37번길 55, 102동 *** 서울 성수동 성수일로8길47, 102동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3 아름마을 424동 ***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21길 7,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164, *** 서울 광진구 중곡동 150-231 현대빌라 ***	근저당 근저당	(주)국**행 중***행					
수용/사용	122	산림동 140-6	대	6.30	6.30	중심 상업업	조*순	서울 중구 산림동 ***											소재 불명	
수용/사용	123	산림동 140-12	대	7.60	7.60	일반 상업업	안*준 조*길 산*수 오*수 성*성	서울 중구 산림동 *** 서울 중구 산림동 *** 서울 중구 산림동 *** 서울 중구 산림동 *** 서울 중구 산림동 ***												소재 불명

구 번	연 번	권 리 의 소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 목	면 적(m <sup>2</sup> )		이 용 상 황	용 도 지 역 또 는 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 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사용	124	산림동 112-17	도로	1.30	1.30	일반 상업업		국(건설교통부)											
수용/사용	125	산림동 123-3	대	1.70	1.70	일반 상업업		국(건설교통부)											
수용/사용	126	산림동 123-7	대	14.90	14.9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27	산림동 190-10	대	6.20	6.2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28	산림동 190-11	대	2.30	2.3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29	산림동 190-13	대	9.60	9.6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0	산림동 190-16	대	16.50	16.5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1	산림동 190-2	대	10.40	10.4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2	산림동 190-21	대	1.30	1.3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3	산림동 190-26	대	37.40	37.4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4	산림동 190-35	대	60.80	60.8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5	산림동 112-11	도로	3.30	3.30	일반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6	산림동 112-2	대	0.30	0.3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7	산림동 112-8	대	3.00	3.00	일반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8	산림동 112-9	대	32.70	32.7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39	산림동 140-7	대	5.60	5.6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40	산림동 112-18	대	2.60	2.60	일반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41	산림동 112-19	대	0.30	0.30	일반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42	산림동 138-1	대	8.30	8.30	중심 상업업		국(기획재정부)											
수용/사용	143	산림동 192	도로	16.90	16.90	일반 상업업		서울특별시											
수용/사용	144	산림동 193	도로	132.30	8.00	중심 상업업		서울특별시											
수용/사용	145	산림동 193-2	도로	1.70	1.70	일반 상업업		서울특별시											

시·군·구	연번	권리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면적(㎡)		이전소재지	소재지	소유자		연면적	소유자		권리유형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시/산림/영양	146	산림196-2	대	7.60	7.6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47	산림196-3	대	11.60	11.6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48	산림197-1	대	8.90	8.9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49	산림200-7	도로	366.90	7.3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0	주교144-1	도로	143.40	5.9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1	주교144-5	도로	19.80	16.4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2	주교145-3	대	10.60	10.6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3	주교146-2	대	6.00	6.0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4	산림179-2	대	4.30	4.3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5	산림264-17	도로	793.40	0.3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6	산림90-3	도로	57.70	5.3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7	산림90-5	도로	3.10	3.1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8	산림60-1	도로	2,878.40	713.6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59	산림89-2	도로	103.10	70.4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60	산림89-3	도로	26.40	2.7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61	주교144-6	도로	43.00	37.0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62	산림184-1	대	6.00	6.0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63	산림177-1	도로	89.30	89.30	영양면	서울특별시								
수시/산림/영양	164	산림177-2	도로	59.50	54.00	영양면	서울특별시								

제출서류	1. 위치도 (1/600 ~ 1/1,200 지적현황도) 1부. (주) 위치도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명세서 연번 명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39호

###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1973.09.06.)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호(1976.04.07.), 건설부고시 제288호(1978.09.2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08.02.)로 무교, 다동,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6호(2022.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1호(2023.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4호(2023.09.21.)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30호(2024.05.16.)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우리 구 을지로1가 42번지 일대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사업의 명칭 :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일대
- 2) 면 적 : 2,191.3㎡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 254.8㎡]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이든센트럴 주식회사 (대표 조광욱)
-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8, 비동 410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0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 06. 1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용도	비고
958.17	30,076.28	49.48	1,048.57	119.8	27/7	업무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관리청	규모 (㎡)	종류	관리청	규모 (㎡)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	공원	중구	62.8	이든센트럴 주식회사	사업시행자 설치, 관리청에 무상귀속
-	-	-	도로	중구	192.0		
계					254.8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 3396-5774)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번	연 번	권 리 재 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면적(㎡)		이용 상 황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유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221.30	2,191.30						17,374.37							
수 용 / 사 용	1	을지로1가 42번지	대지	1,936.50	1,730.00	일반 상업	(주)공화신탁 (이튼센트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사무시설/ 철골철근	1/12	17,036.69	(주)공화신탁 (이튼센트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206.5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	다동 51-9번지	대지	62.80	62.80	일반 상업	(주)공화신탁 (이튼센트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3	다동 53-8번지	대지	222.00	192.00	일반 상업	(주)공화신탁 (이튼센트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제2층근 생/일반 철골	1/2	337.68	(주)공화신탁 (이튼센트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627호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82.0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346호(2024.03.25.)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2024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4.05.29.)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작성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	68,852.5	증 4,983.0	73,835.5	건설부고시 제123호 ('77.6.29)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남대문 정비구역 면적변경 : 68,852.5㎡ → 73,835.5㎡	○ 노후된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신세계백화점 본관 앞)을 향후 정비사업과 연계한 보행면의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정비구역 확대

2. 지구 지정 조서 : 변경

구분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부담면적	
기정	1지구	남창동 51-1번지 일대	4,607.0	4,607.0	207.3 (구역외부담)	일반정비(완료)
기정	2지구	남창동 52-3번지 일대	1,795.9	1,562.3	233.6	일반정비(완료)
기정	3지구	남창동 60-12번지 일대	5,767.6	4,869.4	898.2	일반정비(미시행)
변경	3지구	남창동 60-12번지 일대	6,031.0	6,031.0	개별지구의 시행인가시 결정	일반정비(미시행)
기정	7-1지구	남창동 9-1번지	2,194.6	1,713.9	480.7	일반정비(시행중)
기정	7-2,9-2지구	회현동1가 210번지	4,453.4	3,696.4	757.0	일반정비(완료)
신설	7-3지구	남창동 9-15번지 일대	499.0	499.0	개별지구의 시행인가시 결정	소단위정비
기정	8지구	남창동 5번지	2,846.8	2,438.6	408.2	일반정비(완료)
기정	9-1지구	회현동1가 204번지	2,998.3	2,549.5	448.8	일반정비(완료)
기정	10-1지구	충무로1가 53-1번지	2,170.6	2,170.6	-	보존
기정	10-2지구	충무로1가 52-5번지	2,782.3	2,410.4	371.9	일반정비(완료)
기정	11지구	회현동1가 202번지 일대	4,359.9	3,681.0	678.9	일반정비(미시행)
변경	11지구	회현동1가 202번지 일대	3,858.3	3,858.3	개별지구의 시행인가시 결정	일반정비(미시행)
기정	12지구	남창동 1-2번지 일대	2,743.3	2,743.3	416.0 (구역외부담)	일반정비(완료)
변경	12지구	남창동 1-2번지 일대	2,558.3	2,558.3	416.0 (구역외부담)	일반정비(완료)
기정	13지구	남대문로3가 30-18일대	3,593.0	2,507.0	1,086.0	일반정비(미시행)
기정	14지구	남대문로4가 3-3일대	3,671.9	2,680.0	991.94	일반정비(미시행)
기정	15지구	남대문로4가 20-37일대	2,782.28	2,349.0	433.28	일반정비(미시행)
변경	13·14·15지구	남대문로4가 3-3일대	8,840.0	8,840.0	-	소단위관리
기정	17지구	충무로1가 54번지 일대	10,774.5	8,606.6	2,167.9	일반정비(완료)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일반정비지구(미시행지구) 의무부담률은 15.57%이상, 일반정비지구(완료지구)와 소단위정비지구는 5%이상, 소단위관리지구는 의무부담을 없음

※ 1지구 : 정비사업 완료 이후 이전하지 않은 잔여 기반시설 부담분에 대한 기부채납 완료 시 부담률 완화 5% 적용

■ 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	3지구	3지구	○ 획지면적 변경 : 4,869.4㎡ → 6,031.0㎡	○ 불필요한 기반시설(도로) 확보계획 삭제로 획지면적 증가
신설	7-3지구	7-3지구	○ 소단위정비지구 신설	○ 기반시설(도로)로 확보가 불가능한 대지 일 대를 소단위정비지구로 신설
변경	11지구	11지구	○ 획지면적 변경 : 3,681.0㎡ → 3,858.3㎡	○ 기반시설(도로) 확보계획 축소로 획지 면적 증가
변경	12지구	12지구	○ 획지면적 변경 : 2,743.3㎡ → 2,558.3㎡	○ 일부 필지가 소단위관리지구로 신설됨에 따라 12지구에서 제척되어 획지면적 축소
변경	13지구 14지구 15지구	13·14·15지구	○ 정비유형 변경 : 일반정비지구→소단위관리 지구	○ 현황특성 및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반 정비지구에서 소단위관리지구로 변경

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경후	변 경		
합 계		68,852.5	증) 4,983.0	73,835.5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0,267.5	증) 2,026.1	22,293.6	30.2	-
	도 로	19,940.5	증) 2,074.3	22,014.8	29.8	일부 장기미집행 실효('20.7.2) 구간 재지정 등
	녹지	327.0	감) 327.0	-	-	장기미집행 실효('20.7.2)
	공공공지	-	증) 278.8	278.8	0.4	신설
획지	소 계	48,585.0	증) 2,956.9	51,541.9	69.8	-
	1지구	4,607.0	-	4,607.0	6.2	일반정비(완료)
	2지구	1,562.3	-	1,562.3	2.1	일반정비(완료)
	3지구	4,869.4	증) 1,161.6	6,031.0	8.2	일반정비(미시행), 획지분할가능선 신설
	7-1지구	1,713.9	-	1,713.9	2.3	일반정비(시행중)
	7-2, 9-2지구	3,696.4	-	3,696.4	5.0	일반정비(완료)
	7-3지구	-	증) 499.0	499.0	0.7	소단위정비지구 신설
	8지구	2,438.6	-	2,438.6	3.3	일반정비(완료)
	9-1지구	2,549.5	-	2,549.5	3.5	일반정비(완료)
	10-1지구	2,170.6	-	2,170.6	2.9	보존
	10-2지구	2,410.4	-	2,410.4	3.3	일반정비(완료)
	11지구	3,681.0	증) 177.3	3,858.3	5.2	일반정비(미시행)
	12지구	2,743.3	감) 185.0	2,558.3	3.5	일반정비(완료)
	13지구	2,507.0	감) 2,507.0	-	-	일반정비지구 ▽ 소단위관리지구 변경
	14지구	2,680.0	감) 2,680.0	-	-	
	15지구	2,349.0	감) 2,349.0	-	-	
	13·14·15지구	-	증) 8,840.0	8,840.0	12.0	
17지구	8,606.6	-	8,606.6	11.7	일반정비(완료)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가능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8,852.5	증) 4,983.0	73,835.5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8,852.5	증) 4,983.0	73,835.5	100.0	-

※ 남대문 정비구역 구역계 조정으로 인한 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남대문 정비구역 면적변경 : 68,852.5㎡ → 73,835.5㎡	○ 노후된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신세계백화점 본관 앞)을 향후 정비사업과 연계한 보행편의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정비구역 확대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중구 남창동 283외	900,266 (68,852.5)	건고727호 (63.12.13)	남대문시장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해당사항 없음

- 본 정비계획은 구역 내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법정계획이자 지구별 시행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추후 지구별로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계획 등 구체화되는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산정되어 제공 예정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0	40	주간선 도로	700 (75)	남대문 (광장20)	도동2가	일반 도로	-	건고시 제145호 (1978.06.15.)	○ 광장 중
변경	광로	3	60	40	주간선 도로	700 (165)	남대문 (광장20)	도동2가	일반 도로	-	(1978.06.15.)	○ 광장 중 복결정
기정	대로	1	2	40	주간선 도로	- (86)	-	-	일반 도로	-	-	○ 지하도로 중복 결정
기정	대로	1	4	35~37	주간선 도로	3,500 (2,050)	서울역광장	신당동광장	일반 도로	-	총고 제722호 (1936.12.26.)	○ 철도 중
변경	대로	1	4	35~55	주간선 도로	3,500 (2,050)	서울역광장	신당동광장	일반 도로	-	(1936.12.26.)	○ 철도 중 복결정
기정	중로	1	202	20	집산 도로	133	회현동1가 194-3	충무로1가 53-4	일반 도로	-	건고시 제425호 (1978.12.29)	-
기정	중로	2	189	15~20	집산 도로	200	남창동 64-1	남창동 25-2	일반 도로	-	건고시 제425호 (1978.12.29)	-
변경	중로	2	189	8~15	집산 도로	200	남창동 64-1	남창동 25-2	일반 도로	-	(1978.12.29)	-
기정	중로	2	190	15	집산 도로	225	남창동 51-1	회현동 202-9	일반 도로	-	건고시 제425호 (1978.12.29)	-
변경	중로	2	190	10~15	집산 도로	225	남창동 51-1	회현동 202-9	일반 도로	-	(1978.12.29)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45 (75)	남창동 62-4	남창동 34-1	일반 도로	-	건고시 제486호 (1969.8.16)	-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45 (79)	남창동 62-4	남창동 34-1	일반 도로	-	(1969.8.16)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41	남창동 9-1	회현동1가 194-1	일반 도로	-	건고시 제425호 (1978.12.29)	-
기정	소로	1	a	10	국지 도로	54	회현동1가 194-1	회현동1가 194-3	일반 도로	-	서고 제2012-155호 (2012.06.14.)	○ 입체적 사실 결정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54	회현동1가 194-1	회현동1가 194-3	일반 도로	-	(2012.06.14.)	-
기정	소로	1	3	-	국지 도로	-	남대문로4가 18-1	남대문로4가 18-8	일반 도로	-	건고시 제425호 (1978.12.29)	-
변경	소로	3	4	4	국지 도로	42	남대문로4가 18-11	남대문로4가 18-6	일반 도로	-	(1978.12.29)	-
신설	소로	1	4	10	국지 도로	50	남대문로4가 18-9	남대문로4가 3-7	일반 도로	-	-	-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3	남창동 34-78	남창동 50-59	일반 도로	-	건고시 제486호 (1969.8.16)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01 (63)	남창동 51-11	남창동 50-41	일반 도로	-	건고시 제425호 (1978.12.29)	-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101 (63)	남창동 51-11	남창동 50-41	일반 도로	-	(1978.12.29)	-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78 (47)	남창동 52-3	남창동 52-1	일반 도로	-	건고시 제486호 (1969.8.16)	-
변경	소로	2	5	9.5	국지 도로	78 (47)	남창동 52-3	남창동 52-1	일반 도로	-	(1969.8.16)	-
신설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3	남창동 4-2	남대문로3가 27-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47	충무로1가 52-9	충무로1가 52-2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47	충무로1가 52-9	충무로1가 52-2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115	충무로1가 52-9	충무로1가 52-4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15	충무로1가 52-9	충무로1가 52-4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30	남대문로3가 30-10	남대문로3가 30-19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5	4	특수 도로	55	남대문로4가 3-5	남대문로3가 30-15	보행자 전용도로	-	-	-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 사유
광로 3-60	광로 3-60	○ 도로 선형 일부 변경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20.07) 후 기반시설 도로로 확보가 필요한 부지를 포함하도록 도로 선형 일부 변경
대로 1-4	대로 1-4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퇴계로 실효('20.7) 구간 중 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국공유지 소유 필지를 금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재지정
중로 2-189	중로 2-189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20.07) 후 기반시설 도로로 확보가 필요한 부지를 포함하도록 도로 선형 및 폭원 일부 변경
중로 2-190	중로 2-190		
소로 1-1	소로 1-1	○ 도로 선형 일부 변경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20.07) 후 기반시설 도로로 확보가 필요한 부지를 포함하도록 도로 선형 일부 변경
소로 2-4	소로 2-4		
소로 1-3	소로 3-4	○ 도로 선형 및 폭원, 번호 변경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20.07) 후 기반시설 도로로 확보가 필요한 부지를 포함하도록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소로 2-5	소로 2-5	○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	○ 북측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 폭원 변경
소로 2-	소로 2-11	○ 도로번호 부여	○ 금번 재정비를 통해 도로번호 누락 도로에 도로 번호 부여
소로 2-	소로 2-12		
소로 1-a	소로 1-3		
-	소로 1-4 소로 2-10 소로 3-3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현황 국공유지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신설 결정하여 체계적 관리 도모
-	소로 3-5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국유지 현황도로로, 골목길로서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 도로(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1-a	도로	회현동1가 194-34	연장(m)	54m	서울시고시 제2012-155호 (2012.06.14.)	주1)	
				폭(m)	10m			
				높이(m)	지하2m ~ 지상8~14m 이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 지상 8~14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면적(㎡)	549.5㎡				
변경	소로1-3	도로	회현동1가 194-34	연장(m)	''			
				폭(m)	''			
				높이(m)	''	''		
				면적(㎡)	''	''		

주1) 회현동1가 195-3번지(평균해수면 36.88m)와 회현동1가 194-1번지(평균해수면 42.97m)를 연결하는 연장 54m 구간(경사로 구간은 직선보간하여 보정)에 대해 지하로부터 2m(평균해수면34.97m~40.97m) ~ 지상8m~14m (평균해수면 50.97m) 사이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단, 입체결정 지상부는 건축물 연결통로 정도만 활용할 것)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 사유
소로1-a	소로1-3	○ 도로번호 부여	○ 금번 재정비를 통해 도로번호 누락 도로에 도로 번호 부여

3) 철도(정차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정차장)	남창동 46번지 일대	206	4,859.19 (546.2)	서고 제181호 (1983.03.29.)	○ 7번출입구, 엘리베이터, 환기구 : 입체적결정 ○ 도로 중복결정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회현역 7번 출입구 및 환기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높이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⑥	철도 (정거장)	회현동1가 194-19일대	평균해수면 32.57m ~ 평균해수면 43.03m	269.8	서고 제181호 (1983.03.29.)	

5) 지하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도로	지하도로	회현동 2가 광장 일대 (신세계앞)	9,039.1 (74.6)	서고 제72호 (1976.04.14.)	○ 통로 : 4,402.9㎡ ○ 상가점용 : 3,153.7㎡ ○ 부대시설 : 1,476.4㎡ ○ 도로, 광장 중복결정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름

5) 주차장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지하)	충무로1가 52-5	3,461	감)3,461	-	서고 제58호 (1973.04.25.)	○ 실효 ('20.07, 고시 누락)
폐지	②	주차장 (지하)	충무로1가 54 일대	-	-	-	서고 제58호 (1973.04.25.)	○ 실효 ('20.07, 고시 누락) ○ 지적공부폐쇄 및 시행 반영 (중구공고 제2005-579호)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위치	변경 내용	결정 사유
주차장 (지하)	충무로1가 52-5	○ 주차장 폐지 - 면적 : 3,46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
주차장 (지하)	충무로1가 54 일대	○ 주차장 폐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공공지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남창동 51-13 일대	-	증) 278.8	278.8	-	-

■ 공공공지 결정(신설) 사유서

시설명	변경 내용	결정 사유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현재 중구청에서 토지무상사용 협약 체결('21~'25)하여 관리중인 삼지공원 형태의 부지로 지상부 활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공지 신설

2) 광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광장	남대문로4가 24	25,353 (305.3)	건고 397호 (1973.10.8.)	○ 도로 중복결정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

다. 유통·공급시설

1) 시장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①	시장 (상동백화점)	남창동 1-1 및 1-2일대	2,576.97	서고 제22호 (1976.02.04.)	○ 지하1층~지상4층에 한함 ○ 도로 중복결정
폐지	②	시장	충무로1가 52-5	3,461.0	서고 제58호 (1973.04.25.)	○ 신세계백화점 본관 ○ 도로 중복결정
폐지	③	시장	충무로1가 54	-	-	○ 신세계백화점 신관 ○ 도로 중복결정 ○ 자적공부배해 및 시행 반영 (충구공고 제2005-579호)

■ 시장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 내용	결정 사유
시장 (상동백화점)	○ 시장 폐지 - 면적 : 2,576.97㎡	○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시장 (신세계백화점 본관)	○ 시장 폐지 - 면적 : 3,461㎡	○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시장 (신세계백화점 신관)	○ 시장 폐지	○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도 용도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폐지 결정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 변경

가. 지구별 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지구명	위 치	공공시설부담면적(㎡)	비 고
기정	1지구	남창동 51-1번지 일대	207.3 (구역외부담)	완료('80.12)
기정	2지구	남창동 52-3번지 일대	233.6	완료('87.10)
기정	3지구	남창동 60-12번지 일대	898.2	미시행
변경	3지구	남창동 60-12번지 일대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시 결정	
기정	7-1지구	남창동 9-1번지	480.7	시행중('21.11)
기정	7-2,9-2지구	회현동1가 210번지	757.0	완료('18.06)
신설	7-3지구	남창동 9-15번지 일대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시 결정	소단위정비
기정	8지구	남창동 5번지	408.2	완료('86.02)
기정	9-1지구	회현동1가 204번지	448.8	완료('00.07)
기정	10-1지구	충무로1가 53-1번지	-	보존
기정	10-2지구	충무로1가 52-5번지	371.9	완료('30.10)
기정	11지구	회현동1가 202번지 일대	678.9	미시행
변경	11지구	회현동1가 202번지 일대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시 결정	
기정	12지구	남창동 1-2번지 일대	416.0 (구역외부담)	완료('77.03)
기정	13지구	남대문로3가 30-18일대	1,086.0	미시행
	14지구	남대문로4가 3-3일대	991.94	미시행
	15지구	남대문로4가 20-37일대	433.28	미시행
변경	13·14·15지구	남대문로4가 3-3일대	-	소단위관리
기정	17지구	충무로1가 54번지 일대	2,167.9	완료('05.07)

※ 1지구 : 정비사업 완료 이후 이전하지 않은 잔여 기반시설 부담분에 대한 기부채납 완료 시 부담을 완화 5% 적용

※ 10-2지구(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는 증축-리모델링 시 기반시설 부담 완료

■ 지구별 기반시설 부담 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	3지구	3지구	○ 공공시설부담면적 변경 :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시 결정	○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 시 결정 유도
신설	7-3지구	7-3지구	○ 공공시설부담면적 신설 :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시 결정	○ 7-3지구 신설에 따른 부담 계획 신설
변경	11지구	11지구	○ 공공시설부담면적 변경 :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시 결정	○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 시 결정 유도
변경	13지구 14지구 15지구	13·14· 15지구	○ 공공시설부담면적 변경 : 공공시설 부담계획 삭제	○ 정비유형 변경에 따른 부담 계획 삭제 : 일반정비지구 → 소단위관리지구

나. 정비기반시설 계획 기본방향

구분	부담률	비 고	
일반정비지구	미시행	15.57% 이상	기반시설 계획조정으로 축소된 부담량은 건축물 또는 현금으로 기부채납
	완료	5% 이상	재개발시 기존에 기부채납한 부담량을 감안하여 5%로 의무부담량 완화
소단위정비지구	5% 이상	일반정비지구 부담률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소단위관리지구	-	-	

※ 1지구 : 정비사업 완료 이후 이전하지 않은 잔여 기반시설 부담분에 대한 기부채납 완료 시 부담을 완화 5% 적용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계	보존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일반정비지구 소단위정비지구, 보존지구	48	1	-	47	-	-
소단위관리지구	63	별도 지정없음 (신축, 개보수 등)				-

※ 보존지구 : 옛 제일은행 본점(시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제71호)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지구	4,607.0	남창동 51-1번지 일대	업무,판매	57.30	810.00	22층 이하	일반정비 (완료)
변경	1지구	4,607.0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기정	2지구	1,562.3	남창동 52-3번지 일대	업무,판매	39.66 이하	406.84 이하	10층 이하	
변경	2지구	1,562.3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기정	3지구	4,869.4	남창동 60-12번지 일대	업무,판매	-	-	-	일반정비 (미시행)
변경	3지구	6,031.0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기정	7-1지구	1,713.9	남창동 9-1번지	주거	60 이하	996 이하	70m	일반정비 (시행중)
변경	7-1지구	1,713.9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기정	7-2·9-2 지구	3,696.4	회현동1가 210번지	숙박,업무, 판매	54.42	1,014.24	지하8층/ 지상28층	일반정비 (완료)
변경	7-2·9-2 지구	3,696.4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신설	7-3지구	499.0	남창동 9-15번지 일대	일반상업지 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60 이하 (완화시 8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	소단위 정비지구
기정	8지구	2,438.6	남창동 5번지	판매	46.26	476.36	10층	일반정비 (완료)
변경	8지구	2,438.6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기정	9-1지구	2,549.5	회현동1가 204번지	업무,판매	59.44	1,042.01	23층	일반정비 (완료)
변경	9-1지구	2,549.5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보존	10-1지구	2,170.6	충무로1가 53-1번지	-	-	-	-	보존지구
기정	10-2지구	2,410.4	충무로1가 52-5번지	판매	90 이하	468.6이하	6층/1층이하	일반정비 (완료)
변경	10-2지구	2,410.4		판매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기정	11지구	3,681.0	회현동1가 202번지 일대	업무,판매	-	-	-	일반정비 (미시행)
변경	11지구	3,858.3		업무,판매 주거,숙박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기정	12지구	2,743.3	남창동 1-2번지 일대	교회,백화점	69.80	646.00	9층	일반정비 (완료)
변경	12지구	2,558.3		판매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3지구	2,507.0	남대문로3가 30-18일대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가능한 용도	60 이하 (완화시 80이하)	기준 600/-/ 법적용적률 2배이하	40m	일반정비 (미시행)	
	14지구	2,680.0							남대문로4가 3-3일대
	15지구	2,349.0							남대문로4가 20-37일대
변경	13·14·15지구	8,840.0	남대문로4가 20-37일대					소단위 관리지구	
기정	17지구	8,606.6	충무로1가 54번지 일대	업무	59.76	793.73	19층	일반정비 (완료)	
변경	17지구	8,606.6		판매	50 이하	기준600/허용800/ 상한 α 이하	70m+α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_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 준용
- ※ 일반정비지구(완료)는 재개발시 일반정비지구(미시행)과 동일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 적용, 리모델링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름
- ※ 보존지구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보존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 10-2지구, 12지구, 17지구의 경우는 판매시설을 주용도로 하되 그 비율은 개별지구 정비계획 변경 시 정함
-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 소단위정비·관리지구의 건폐율은 다음의 조건 충족시 80%까지 완화 적용
  - 승레문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최고높이 11m이하)에 저촉되는 필지
  - 개방형 화장실 설치, 소방시설 설치, 가로지장물 수용,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용시설\* 설치(연면적의 5% 이상), 조업차량 및 오토바이 주차차공간 설치 중 택1 \*상인 및 고객상담실, 보육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물품보관소 등 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통칭함

나. 건폐율 계획

구분	건폐율	건폐율 완화	비고
일반정비지구	50% 이하	-	-
소단위정비지구	60% 이하	80% 이하	○ (A) 승레문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11m이하)에 저촉되는 필지 ○ (B) 아래 지침 중 택1 - 개방형 화장실 설치, 소방시설 설치, 가로지장물 수용,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용시설* 설치(연면적의 5% 이상), 조업차량 및 오토바이 주차차공간 설치
소단위관리지구	60% 이하	80% 이하	*상인 및 고객상담실, 보육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물품보관소 등 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통칭함

다.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정비지구	600%	800%	α	※ 상한용적률 - 일반정비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 준용
소단위정비지구	600%	800%	α	
소단위관리지구	600%	-	법정 2배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 필요시 공공시설부지 제공을 통해 완화 가능

라. 높이 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일반정비지구	기준높이 70m+α	○ 일반정비지구의 완화높이(α)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준용
소단위정비지구	최고높이 70m 이하	
소단위관리지구	최고높이 40m 이하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3지구	기정	•소월로변, 퇴계로변 건축한계선 3m	일반정비지구	
		변경	•소로2-5호선, 남대문시장4길(소로1-1호선), 퇴계로변, 소월로변 건축한계선 3m •소월로변 저층부 벽면한계선 6m~9m - 저층부 : 3층, 14m이하		
	11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일반정비지구
		변경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남대문로변 저층부 벽면지정선 3m - 저층부 : 약 25m이하(옛 제일은행 코니스 높이) •남대문시장10길변(중로1-202호선) 건축한계선 5m		
	7-3지구	신설	•남대문시장8길변 건축한계선 3~3.5m		소단위정비지구
	13·14·15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남대문시장길변 : 건축한계선 3m		소단위관리지구
		변경	•남대문로변 : 건축지정선 3m - 건축지정선의 수직면에 건축물 외벽면이 1/2이상 접할 것 •소로3-4, 3-5호선변 : 건축한계선 1m •남대문로4가 20-49 일대 : 0~2m		
	1지구,2지구	기정	•소월로변 건축한계선 5m		일반정비지구
	7-1지구	기정	•퇴계로변 건축한계선 3m, 고층부 벽면한계선 4m		
	7-2·9-2지구	기정	•퇴계로변 건축한계선 3m, 남대문시장10길변 5m		
	12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17지구	기정	•퇴계로변 건축한계선 3m, 남대문시장10길변 건축한계선 3m		
	10-2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소공로변 건축한계선 3m		
	10-1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보존지구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3지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형태	• 서울성곽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형태로 입면 조성, 유사한 재료·색채·패턴 사용을 권장 • 지정문화재인 서울성곽에 의한 문화재 양각규제를 고려한 배치 권장	-
저층부 특화	• 남대문시장4길변저층부에 남대문시장 대응하는 가로활성화용도 배치, 입면은 가로 정연한 디자인으로 조성 권장 • 1층부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입면으로 조성 • 1층 가각부 및 인접대지와 면한 벽면을 개방형 입면으로 조성 • 저층부 야간경관조명 등 설치 권장	-
옥외공간	• 양각규제에 의해 조성된 옥상은 조정·휴게공간으로 조성, 옥상일부를 외부에 개방하여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 권장 • 남산육교와의 단차부는 개방형 녹지로 조성, 남산육교와 보행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조성 권장 • 남산육교와 연결되는 보행로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휴게공간 등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권장	-

■ 11지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저층부 특화	• 인접한 옛 제일은행 본점, 신세계 백화점, 한국은행 등 근대건축물과의 연속성 및 조화를 위한 입면디자인·색채·재료사용 권장 • 옛 제일은행과의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돌림띠 띠(코니스) 높이(약25m)를 기준으로 저층부(기단)와 고층부를 분리하여 입면조성 권장 • 근대건축물의 외부 장식기둥 및 외벽 격자 패턴등의 근대건축 요소를 활용 및 차용하여 저층부 입면디자인 적용 권장 • 건축물 입면은 남대문로 변에 면하도록 배치하여 경관연속성 유지 권장	-
저층부 외관	• 남대문로변 1층부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입면으로 조성 권장 •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 설치시 바닥면으로부터 3~5m 사이에 사인존 조성 권장 • 출입문과 디스플레이 윈도우존은 바닥면으로부터 3m내 조성 권장 • 어닝등 차양시설 설치하는 차양존은 바닥면으로부터 2.4m내 조성 권장	-

■ 13·14·15지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형태	• 3층또는 11m이하 부분은 기존 맞벽건축물의 수직 피가 강조된 격자형 패턴 등 기존 입면 요소 및 재료를 활용한 디자인 권장 • 10층 이상 건축물은 휴먼스케일을 고려, 저층부및 고층부를 분리(재료 및 색채 등)하여 입면조성 권장 • 승례문 등의 조망을 위해 투시형 옥상 난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저층부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층 이상 입면에 대해 맞벽건축물 연속성을 고려하여 2~5m 이내마다 수직 분절요소 설치 권장</li> <li>남대문로변 1층부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입면으로 조성 권장</li> <li>1층 가각부 및 측면공지에 접한 벽면은 개방형 입면으로 조성 권장</li> <li>수평분할요소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동일 건축물 내 일치하게 설치 권장</li> <li>저층부 야간경관조명 등 설치 권장</li> <li>옥외광고물 설치시 바닥면으로부터 3~5m 사이에 사인존 조성 권장</li> <li>출입문과 디스플레이 윈도우존은 바닥면으로부터 3m내 조성 권장</li> </ul>	-
옥외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접대지경계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생기는 공간(측면공지)은 휴게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설비시설 및 지장물설치 사양</li> <li>건축물 옥상간에보행연결로를 조성할 것을 권장(옥상정원에 외부인이 상시 접근가능 하도록 조성 권장</li> </ul>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3지구 : 건축한계선 후퇴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li> </ul>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지구 : 서측 남대문로변 ~ 남대문시장 보행연결을 위해 폭 4m로 지정</li> <li>13·14·15지구 : 남대문로변 ~ 남대문시장 보행연결을 위해 폭 2m로 지정</li> </ul>	-

2)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14·15지구 : 모든 도로에서 대지 내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li> <li>7-3지구 : 퇴계로변, 남대문시장8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li> <li>3지구 : 퇴계로변, 남대문시장4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li> <li>11지구 : 남대문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li> </ul>	-
주차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로의 차량출입은 주차출입구가 표시된 부분에 한함</li> <li>- 대상지역 : 3지구, 11지구</li> </ul>	-
차없는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중심의 시장 특성 유지 및 보행편의를 위하여 요일 및 시간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li> <li>- 평일 및 토요일 : 11시~22시 / 일요일 : 9시~22시 차량통행 금지</li> <li>- 위치 : 남대문시장길 일부구간(남창동 34-78~31-1, 남대문로3가 30-1~남창동 30), 남대문시장4길 (남창동 18-1~47-14)</li> </ul>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차없는거리 계획 준용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이 제한되는 대지 (7-3지구, 13·14·15지구)</li> <li>당해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li> </ul>	-

9.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일반정비 지구	1	남창동 51-1번지 일대	4,607.0	-	4,607.0	일반정비(완료)
기정		2	남창동 52-3번지 일대	1,562.3	-	1,562.3	일반정비(완료)
변경		3	남창동 60-12번지 일대	4,869.4	증1,161.6	6,031.0	획지분할가능선 신설
기정		7-1	남창동 9-1번지	1,713.9	-	1,713.9	일반정비(시행중)
기정		7-2,9-2	회현동1가 210번지	3,696.4	-	3,696.4	일반정비(완료)
기정		8	남창동 5번지	2,438.6	-	2,438.6	일반정비(완료)
기정		9-1	회현동1가 204번지	2,549.5	-	2,549.5	일반정비(완료)
기정		10-2	충무로1가 52-5번지	2,410.4	-	2,410.4	일반정비(완료)
변경		11	회현동1가 202번지일대	3,681.0	증) 177.3	3,858.3	일반정비(미시행)
기정		12	남창동 1-2번지 일대	2,743.3	감) 185.0	2,558.3	일반정비(완료)
기정		17	충무로1가 54번지 일대	8,606.6	-	8,606.6	일반정비(완료)
기정		13	남대문로3가30-18일대	2,507.0	감)2,507.0	-	일반정비(미시행)
기정		14	남대문로4가 3-3일대	2,680.0	감)2,680.0	-	일반정비(미시행)
기정		15	남대문로4가 20-37일대	2,349.0	감)2,349.0	-	일반정비(미시행)
변경		소단위 관리지구	13·14·15	남대문로4가 3-3일대	-	증)8,840.0	8,840.0
신설	소단위 정비지구	7-3	남창동 9-15번지 일대	-	증) 499.0	499.0	소단위정비지구
변경	보존지구	10-1	충무로1가 53-1번지	2,170.6	-	2,170.6	존치지구 →보존지구 ※「2030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내용반영에 따른 명칭변경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가능

■ 소단위관리지구의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계획내용
가구 및 획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관리지구인 13·14·15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남대문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구 및 획지계획은 없음</li> <li>※ 단, 최대개발규모 이하를 준수하여 사업시행 시 해당 필지는 가구 및 획지의 기준이 됨</li> <li>가로연속성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필요시 맞벽건축 및 건축협정 가능</li> </ul>
최대개발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0㎡ 이하</li> <li>-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공동개발시 심의를 통한 정비수법 변경 필요</li> </ul>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개발규모 이상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연결한 필지간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허용</li> <li>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동개발을 불허함</li> <li>1. 특정대지의 돌출 등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li> <li>2.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길이)가 1:3 이상인 경우</li> <li>3. 공동개발로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li> </ul>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	-	증) 73,835.5	73,835.5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li> <li>위치 :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li> <li>면적 : 73,835.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li> </ul>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 정비계획 결정사항과 동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정비계획 결정사항과 동일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소단위정비·관리지구

○ 관련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용도 적용

구분	내 용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9) [별표9]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구분	내 용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사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중예문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범위에 저촉되는 필지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등·식물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해당법규 및 관련지침의 제·개정 또는 변경으로 상기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제·개정된 해당법규 및 관련지침을 우선 적용

■ 일반정비지구

○ 10-2지구, 12지구, 17지구 : 판매시설

※ 판매시설을 주용도로 하되 그 비율은 정비계획 변경 시 정함

○ 그 외 지구 : 정비계획에 따름(「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름)

2)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분	건폐율	건폐율 완화	비 고
일반정비지구	50% 이하	-	-
소단위정비지구	60% 이하	80% 이하	○ (A) 승례문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11m이하)에 저촉되는 필지 ○ (B) 아래 지침 중 택1 - 개방형 화장실 설치, 소방시설 설치, 가로지장물 수용,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용시설* 설치(연면적의 5% 이상), 조업차량 및 오토바이 주정차공간 설치 *상인 및 고객상담실, 보육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물품보관소 등 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통칭함
소단위관리지구	60% 이하	80% 이하	

3)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정비지구	600%	800%	α	※ 상한용적률 - 일반정비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준용 - 소단위관리지구 : 필요시 공공시설부지 제공을 통해 완화 가능
소단위정비지구	600%	800%	α	
소단위관리지구	600%	-	법정 2배이하	

4)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일반정비지구	기준높이 70m+α	○ 일반정비지구의 완화높이(α)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준용
소단위정비지구	최고높이 70m 이하	
소단위관리지구	최고높이 40m 이하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3지구	기정 •소월로변, 퇴계로변 건축한계선 3m	일반정비지구	
		변경 •소로2-5호선, 남대문시장4길(소로1-1호선), 퇴계로변, 소월로변 건축한계선 3m •소월로변 저층부 벽면한계선 6m~9m - 저층부 : 3층, 14m이하		
	11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일반정비지구
		변경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남대문로변 저층부 벽면지정선 3m - 저층부 : 약 25m이하(옛 제일은행 코니스 높이) •남대문시장10길변(중로1-202호선) 건축한계선 5m		
	7-3지구	신설 •남대문시장8길변 건축한계선 3~3.5m		소단위정비지구
	13·14·15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남대문시장길변 : 건축한계선 3m		소단위관리지구
		변경 •남대문로변 : 건축지정선 3m - 건축지정선의 수직면에 건축물 외벽면이 1/2이상 접할 것 •소로3-4, 3-5호선변 : 건축한계선 1m •남대문로4가 20-49 일대 : 0~2m		
	1지구,2지구	기정 •소월로변 건축한계선 5m		일반정비지구
	7-1지구	기정 •퇴계로변 건축한계선 3m, 고층부 벽면한계선 4m		
	7-2·9-2지구	기정 •퇴계로변 건축한계선 3m, 남대문시장10길변 5m		
	12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17지구	기정 •퇴계로변 건축한계선 3m, 남대문시장10길변 건축한계선 3m		
	10-2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소공로변 건축한계선 3m		
10-1지구	기정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보존지구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3지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형태	• 서울성곽 등을 고려한 창의적인 형태로 입면 조성, 유사한 재료·색채·패턴 사용을 권장 • 지정문화재인 서울성곽에 의한 문화재 앙각규제를 고려한 배치 권장	-
저층부 특화	• 남대문시장4길변저층부에 남대문시장 대응하는 가로활성화용도 배치, 입면은 가로 정연한 디자인으로 조성 권장 • 1층부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입면으로 조성 • 1층 가각부 및 인접대지와 면한 벽면을 개방형 입면으로 조성 • 저층부 야간경관조명 등 설치 권장	-
옥외공간	• 앙각규제에 의해 조성된 옥상은 조정 휴게공간으로 조성, 옥상일부를 외부에 개방하여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 권장 • 남산육교와의 단차부는 개방형 녹지로 조성, 남산육교와 보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조성 권장 • 남산육교와 연결되는 보행로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휴게공간 등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권장	-

■ 11지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저층부 특화	• 인접한 옛 제일은행 본점, 신세계 백화점, 한국은행 등 근대건축물과의 연속성 및 조화를 위한 입면디자인·색채·재료사용 권장 • 옛 제일은행과의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돌림띠 띠(코니스) 높이(약25m)를 기준으로 저층부(기단)와 고층부를 분리하여 입면조성 권장 • 근대건축물의 외부 장식기둥 및 외벽 격자 패턴등의 근대건축 요소를 활용 및 차용하여 저층부 입면디자인 적용 권장 • 건축물 입면은 남대문로 변에 면하도록 배치하여 경관연속성 유지 권장	-
저층부 외관	• 남대문로변 1층부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입면으로 조성 권장 •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 금지 • 옥외광고물 설치시 바닥면으로부터 3~5m 사이에 사인존 조성 권장 • 출입문과 디스플레이 윈도우존은 바닥면으로부터 3m내 조성 권장 • 어린이등 차양시설 설치하는 차양존은 바닥면으로부터 2.4m내 조성 권장	-

■ 13·14·15지구

구분	계획내용	비고
형태	• 3층또는 11m이하 부분은 기존 맞벽건축물의 수직 띠가 강조된 격자형 패턴 등 기존 입면 요소 및 재료를 활용한 디자인 권장 • 10층 이상 건축물은 휴먼스케일을 고려, 저층부및 고층부를 분리(재료 및 색채 등)하여 입면조성 권장 • 승례문 등의 조망을 위해 투시형 옥상 난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저층부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층 이상 입면에 대해 맞벽건축물 연속성을 고려하여 2~5m이내마다 수직 분절요소 설치 권장</li> <li>남대문로변 1층부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입면으로 조성 권장</li> <li>1층 각각부 및 측면공지에 접한 벽면은 개방형 입면으로 조성 권장</li> <li>수평분할요소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동일 건축물 내 일치하게 설치 권장</li> <li>저층부 야간경관조명 등 설치 권장</li> <li>옥외광고물 설치시 바닥면으로부터 3~5m 사이에 사인존 조성 권장</li> <li>출입문과 디스플레이 윈도우존은 바닥면으로부터 3m내 조성 권장</li> </ul>	-
옥외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접대지경계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해 생기는 공간(측면공지)은 휴게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설비시설 및 지장물설치 사양</li> <li>건축물 옥상간에보행연결로를조성할 것을 권장옥상정원에 외부인이 상시 접근가능 하도록 조성 권장</li> </ul>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내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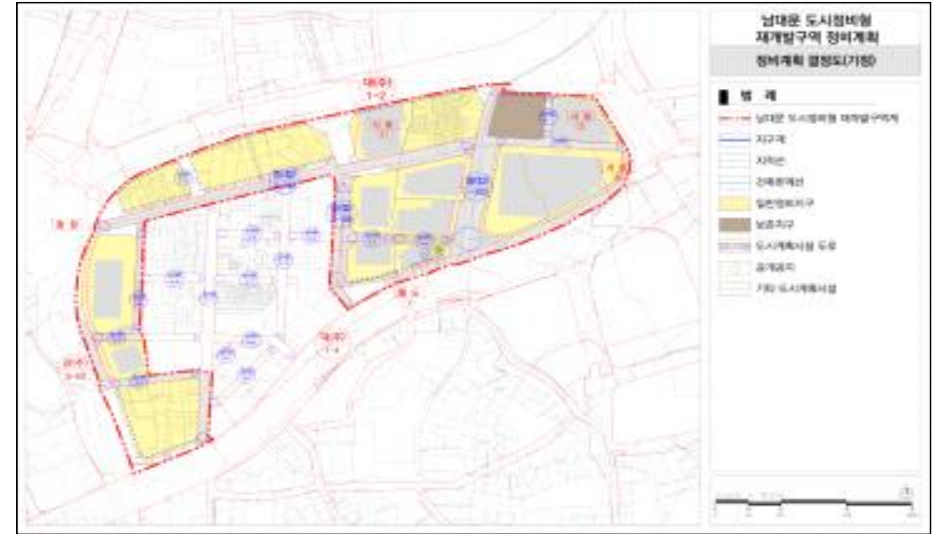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3지구 : 건축한계선 후퇴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li> </ul>	-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지구 : 서측 남대문로변~남대문시장 보행연결을 위해 폭 4m로 지정</li> <li>13·14·15지구 : 남대문로변~남대문시장 보행연결을 위해 폭 2m로 지정</li> </ul>	-

2) 교통처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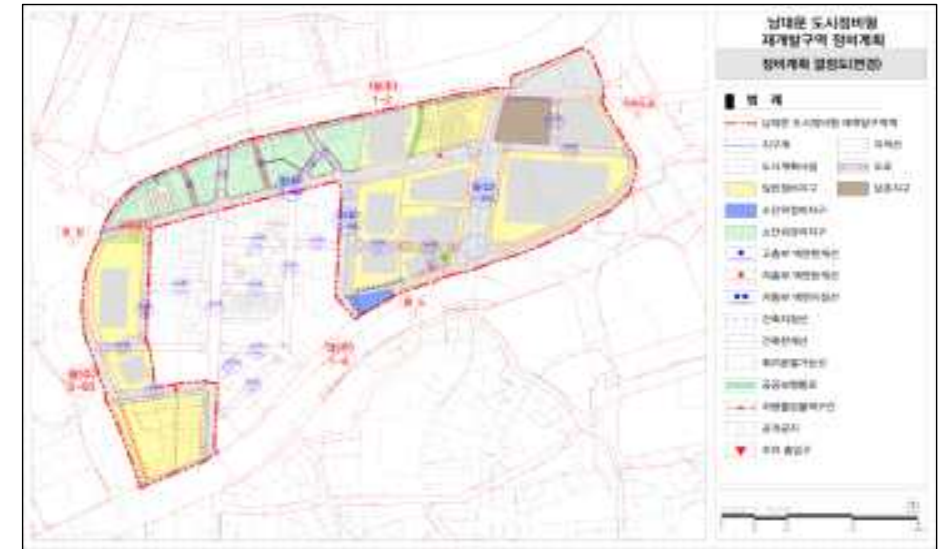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14·15지구 : 모든 도로에서 대지 내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li> <li>7-3지구 : 퇴계로변, 남대문시장8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li> <li>3지구 : 퇴계로변, 남대문시장4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li> <li>11지구 : 남대문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li> </ul>	-
주차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로의 차량출입은 주차출입구가 표시된 부분에 한함</li> <li>- 대상지역 : 3지구, 11지구</li> </ul>	-
차없는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행중심의 시장 특성 유지 및 보행편의를 위하여 요일 및 시간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li> <li>- 평일 및 토요일 : 11시~22시 / 일요일 : 9시~22시 차량통행 금지</li> <li>- 위치 : 남대문시장길 일부구간(남창동 34-78~31-1, 남대문로3가 30-1~남창동 30), 남대문시장4길 (남창동 18-1~47-14)</li> </ul>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차없는거리 계획 준용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이 제한되는 대지 (7-3지구, 13·14·15지구)</li> <li>당해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완화</li> </ul>	-

IV. 정비계획 변경(안)도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V. 기 타

1) 공람기간 : 2024. 06. 19. ~ 2024. 07. 19.(30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3)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